
**2021 금융의 날
포상후보자 추천요령**

2021. 3.

금 융 위 원 회



목 차



I. 금융의 날 포상 개요	1
II. 부문별 추천 기준	2
1. 저축·투자부문 포상대상	2
2. 혁신금융부문 포상대상	4
3. 포용금융부문 포상대상	5
III. 정부포상 기준	6
IV. 신청방법	10
붙임. 정부포상 추천서류 양식	13

I. 금융의 날 포상 개요 (금융발전유공)

1. 포상배경

- 법정 기념일인(「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」) '금융의 날'을 기념하여 금융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포상을 수여
 - '금융의 날'은 '64년부터 이어온 '저축의 날'을 확대·개편한 기념일로 '16년 제 1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 6회를 맞이함
- '금융의 날' 기념식 및 포상을 통해 금융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

2. 포상종류

- 저축·투자부문, 혁신금융부문, 포용금융부문으로 나누어, 훈·포장, 대통령·국무총리표창, 금융위원장표창 수여
 - * 올해 구체적인 포상규모는 추후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
(20년도: 훈장 2개, 포장 5개, 대통령표창 18개, 국무총리표창 27개, 금융위원장표창 124개)

3. 주요 일정

- 신청·접수기간 : '21.3.29.(월) ~ 5.14.(금)
- 포상후보자 적격여부 확인 및 대국민 공개검증 등 : 8~9월
- 포상대상자 결정 통보 : 10월중
- 포상일시 : '21.10.26(화) (제6회 금융의 날 기념식)

II. 부문별 추천기준 (저축·투자, 혁신금융, 포용금융)

1. 저축·투자 부문

□ 일반인

- 근검·절약·저축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주위에 저축을 적극 권장하는 등 저축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큰 자
- 저축 이외에도 다양한 금융상품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, 건전한 투자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큰 자
- 저축문화 및 건전한 투자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, 캠페인, 금융교육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자
- 저축 및 투자로 얻은 재산을 어려운 이웃에 기부하는 등 나눔의 정신을 실천한 자

□ 학생(초·중·고등학생에 한함)

- 평소에 근검·절약하고 부지런한 생활태도로 저축액을 스스로 마련하고 저축활동을 생활화한 학생
- 금융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활동을 통해 주변 학우에게 건전한 금융인식 확산에 기여한 학생

□ 학교·교사* 및 저축·투자 업무 관련 공무원(군인 등 포함)

* 초·중·고등학교 및 그 교사에 한함

- 금융교육 및 신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금융 및 신용관리 관련 교육에 공이 있는 교사 및 학교

- 저축·투자 유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제도개선·홍보 활동으로 저축증대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이 큰 자
- 공식적으로 관련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조직에서 체계적으로 저축 및 건전한 투자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·홍보활동에 기여한 공이 큰 자

□ 금융기관 직원

- 저축상품 영업, 새로운 저축상품 개발, 획기적인 마케팅 등으로 저축증대 실적이 뛰어나거나 저축정신의 확산에 공이 큰 자
- 저축문화 확산에 공이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저축습관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한 자
- 금융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저축·건전한 투자문화 확산에 기여한 금융회사 직원

□ 금융의 국민소득 증대 기능 제고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

- ISA, 펀드, 투자자문업 등 국민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제도·인프라 개선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

2. 혁신금융 부문

- 혁신적 기술·아이디어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 자 또는 단체
 - 혁신기업의 창업·성장 지원, 코스닥·코넥스시장 활성화 등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
 - 기술금융, 동산·IP담보 활성화, 중소·중견기업 정책금융 공급 확대 등 금융의 생산적인 자금중개기능 강화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
- 금융산업의 발전 및 경쟁촉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
 - 핀테크, 빅데이터,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촉진하여 다양한 혁신 금융서비스 출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
 - 새로운 금융업 출현을 촉진하는 등 금융업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금융산업내 혁신적 도전자 출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
- 공정경제를 위한 금융부문 정책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
 -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·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
 - 스튜어드십 코드, 주주총회 활성화 등 기관·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
- 금융시장의 확고한 안정을 위해 기여한 자 또는 단체
 - 금융부문의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점검 및 정책 제언을 통해 금융부문 안정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
 - 금융분야의 미시적·거시적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정책수립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
-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
 - 시중자금의 녹색(친환경) 투자 확대 촉진 또는 금융권의 기후 변화 대응노력 확산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

3. 포용금융 부문

-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
- 서민금융 정책 마련 및 현장 실무를 통해 서민 금융 애로 해소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
 - 서민금융 분야에 재직한 자로서, 서민금융 정책마련 및 제도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, 수범사례 확산 등 정부 정책에 기여한 자
 -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여 서민층의 실질적인 금융 자활을 도운 서민금융 유관기관·금융회사 등의 현장 실무자, 자원봉사자 등
 - 서민금융 정책 확대에 기여도가 높은 유관기관
- 불법 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관리·감독에 기여한 자
 - 불법 사금융 근절에 기여하거나, 대부업 관리·감독 업무에 힘쓴 유관기관 실무자 또는 담당 공무원
- 금융 소비자보호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
 - 금융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,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, 생활밀착형 금융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
 -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및 일괄 현금화 서비스를 제안하거나, 관련 시스템구축 및 서비스운영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
 - 보험 모집질서 개선,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등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
 -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, 채권추심 규제 정비 등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
- 금융권의 사회적책임 강화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
 - 사회적금융 활성화,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, 금융권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등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

Ⅲ. 정부포상 기준

□ 일반기준

- 추천대상은 금융발전에 대한 전사회적인 공감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은 물론 일반국민 등 각계 각층을 망라하여 추천할 것
- 공적사항은 실적뿐만 아니라, 노력과 창의에 의한 주위의 파급 효과를 충분히 감안할 것
- 실적은 숫자의 많고 적음보다는 환경 및 노력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
- 사회 각계각층에서 발굴·추천하되 직업별·지역별·성별 균형을 유지할 것

□ 수공기간

- 훈장은 15년이상, 포장은 10년이상, 대통령·국무총리 표창은 5년이상,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은 3년(개인)·2년(단체) 이상 공적이 있을 것

□ 재포상 금지기간(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)

-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,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*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

*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(수여일)에서 훈장은 7년, 포장은 5년, 대통령·국무총리표창은 3년, 금융위원장 표창은 2년이 지나야 추천(추천일)될 수 있음

□ 포상의 제한

-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
-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,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-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-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

□ 추천 제한 (다음페이지 세부기준 참고)

-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 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-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-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
-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-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
- 사회적 물의 등 유발
- 금융관련 법령 위반자

❖ 포상 추천 제외 세부 기준 ❖

1)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
2) 형사처분

가)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나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다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라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마)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바)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사)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※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

※ 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가능

3)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※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이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

4)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
가) 최근 3년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10조 및 같은 법 「시행규칙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
나) ‘임원’ 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
※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,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
- 「사업장 등기부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(<http://dart.fss.or.kr>, 회사별검색-사업보고서-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)을 통해 확인

※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
※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
다)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5)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

가)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※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
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다) 다만, 상기의 가), 나)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6)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
가)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
나)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
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7)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

* 국세·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(www.share.go.kr)의 e하나로민원(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)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

8) 사회적 물의 등 유발

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9) 금융관련 법령 위반자

- 금융 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자는 아래표의 기간동안 표창을 제한

< 징계 유형별 포상제한 기간 >

구분	개인(임원)	개인(직원)	기관	제한기간
중징계	해임권고	면직	허가취소	4년
	직무정지	정직	업무정지	3년
	문책적경고	감봉	시정명령 기관경고	2년
경징계	주의적경고	견책	기관주의	1년
	주의	주의/경고		

IV. 신청 방법 (기관추천, 국민추천)

※ 신청시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등과 관련하여 **문의사항**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이현기 주무관(02-2100-2856) 또는 이지호 사무관(02-2100-2854)으로 **전화** 부탁드립니다.

1. 기관추천

□ 제출서류*

* **반드시 붙임(13~16페이지)의 양식을 사용**해야하며 기관 자체적인 공적조서 양식을 사용할 경우 필요정보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- ① [붙임1] 추천 기관별 총괄표
- ② 포상후보자 관련서류 (아래 표)

구분	제출서류
개인	- [붙임2] 공적조서 1부 - [붙임3] 공적요약서 1부 - [붙임4]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- 공적 증빙 자료 ※ 포상후보자가 공무원인 경우(군인 등 포함) : 소속기관 인사담당관의 서명 및 소속기관장의 직인 날인한 「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」 추가
단체	- [붙임2] 공적조서 1부 - [붙임3] 공적요약서 1부 - [붙임4]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- 공적 증빙 자료 -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※ 공문, 공적조서, 공적요약서,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원본 제출

□ 접수 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 원칙

* 전자문서 발송 가능기관은 방문·우편접수와 함께 온라인 공문발송도 필수

1. 공문제목 : "2021년 금융의 날 포상 후보자 추천"

2. 첨부파일

① 후보자별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한 개의 pdf 파일로 묶은 뒤 첨부
(파일명 : "[부분명]후보자 이름.pdf" * (예) [혁신금융]홍길동.pdf)

② [붙임1] 추천 기관별 총괄표

□ 주 소 : (03171)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
16층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
이현기 주무관 또는 이지호 사무관

2. 국민추천

※ 국민추천제 : 금융발전에 기여하신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
기관 외에도 국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 가능한 「국민추천제」를 시행
하오니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본인 및 단체 자체추천은 불가능)

□ 접수 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, 이메일접수*

* 국민추천에 한하여 이메일접수도 가능 함. 이메일 제출 시 '국민추천서'
및 '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' 원본은 우편으로 제출
(이현기 주무관(pink1030@korea.kr))

□ 주 소 : (03171)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
16층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
이현기 주무관 또는 이지호 사무관

□ 제출서류* (원본) : ① [붙임4]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
② [붙임5] 국민추천서 1부
③ 공적 증빙 자료

* 반드시 붙임 (16~17페이지)의 양식을 사용해야하며 다른 양식을 사용할 경우
필요정보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.

[붙임 1]

추천 기관별 총괄표

1. 후보자 소속 기관명 : _____

* 금융기관이 "저축·투자부문 일반인"을 추천한 경우 소속기관 :
추천한 지점·조합 등을 기재

2. 추천 담당자 성명·직위 : _____

3. 추천 담당자 연락처(회사) : _____

4. 추천 담당자 이메일 : _____

5. 추천한 포상후보자 총괄표

연번	부문	소속	직위	성명	수공기간	포상·징계	포상 개인	후보자 연락처*
1	예)혁신금융							
2								
3								

* 포상대상자 선정시 행사일정 등 안내 목적

※ [필수] 기관별 추천 담당자는 정부포상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
다음의 파일·정보를 꼭 보관·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.

- ① 포상후보자의 개인/직장 연락처
- ② 포상후보자의 공적조서 한글/워드본 ("공적내용" 텍스트 복사가 가능한 파일)
- ③ 포상후보자의 공적조서 등 관련파일 pdf본(스캔본)

공적조서

(앞 쪽)

성 명	(한자)		
주민등록번호	단체는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	군번(군인인 경우)	
	추천자 조희를 위해 중요하므로 반드시 13자리 모두 기재	국적(외국인인 경우)	
주 소	[도로명 주소 기재]		
직 업		소 속	법적 명칭 (표창장 등에 공식기재되는 명칭)
직 위		직 급 · 계 급	
추천 훈격(勳格)	(공란)	추 천 순 위	(공란)
공 적 분 야	저축·투자, 혁신금융, 포용금융 중 1개 부문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 “금융발전(○○부문)”	공 적 기 간	○년○월로 기재 (예)7년 5월 (추천일기준 해당분야 공적기간)
<p>공적 요지 (60~75자(130~150byte) 내외)</p> <p>공적요지는 향후 ○○에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문장의 끝은 “~~에 기여함”으로 표시</p>			
조사자 : 추천 담당부서장 또는 소속기관 인사담당 부서장			
소 속			
직위(직급·계급)		성 명	(서명 또는 인)
<p>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1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천관 조사자 소속 기관장 직위 성명</p>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top: 20px;"> 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orange; padding: 10px 20px; display: inline-block;">관인</div> </div>		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주요 경력	
연 월 일	이력사항
과거 포상기록(훈장·포장·표창별로 기록)	
수여일(연 월 일)	[상별 내용 상세 기재하되, 이력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표시]
	[훈장·포장·대통령포창·국무총리포창·금융위원장포창은 반드시 기재]
공적 내용	
<p>○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가급적 구체적·계량적·객관적으로 작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,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- 공적기간에 해당하는 경력사항 위주로 기재 -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<p>○ 공적내용은 2000자 이상 작성(띄어쓰기 포함)</p> <p>* 행안부 상훈시스템 상 2000자 미만은 후보자 등록 불가능</p>	

공 적 요 약 서

소 속			직급(직위)		
성 명	(한글)		주민등록 번호	(만 세)	
	(한자)				
재직기간	년	월	<i>[포상 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]</i>		
수공기간	년	월	<i>[관련 유공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기간]</i>		
주요근무 경 력	- - -				
과거포상경력 (장관표창이상) <i>[훈장·포장·대통령표창·국무총리표창·금융위원장표창 반드시 기재]</i>	훈 격	수여일자	징계 · 형벌 <i>[해당사항 반드시 기재]</i>	종 류	일 자
<p><i>※ 200자 내외로 핵심 공적사항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기재하되 우수제안, 특별공적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</i></p>					
<p><i>(중고딕 13포인트, 반드시 1페이지로 작성)</i></p>					
작 성 자 (인사담당자)			확 인 자 (인사담당자)		
직급	성명	(인)	직급	성명	(인)

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

□ 포상 후보자

성명			
소속(주소)		직위(급)	

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,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
1.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,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.
 ※ 특히, 아래의 “신고의무 사항”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「상훈법」 제8조제1호의 “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

<p>■ 신고의무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찰·검찰의 조사(수사)를 받게 된 경우 ○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○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○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(공무원만 해당) ※ 「상훈법」 제38조(자료제출 및 벌칙)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·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-

2.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.

2021. . .

성명 (서명)

< 개인정보 제공 동의 >
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1. 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)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 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,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, 정부포상 결정·취소 시 관보게재,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,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
2. (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) 「상훈법시행령」 제33조에 따라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직업, 소속, 직위 및 직급(계급), 공적내용, 공적요지, 주요경력, 군번(군인의 경우), 국적(외국인의 경우)
3. 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) 서훈기록부는 영구,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 의결서는 준영구,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,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,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

<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. /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. >

「금융발전 유공(00*분야)」 정부포상 후보자 국민추천서

※ 저축·투자, 혁신금융, 포용금융 중 한가지 작성

추천인	성명* (단체명)		관계*	(피추천인의)
	연락처*	(휴대전화/전화)		
	전자우편			
피추천인 (포상후보자)	성명* (단체명)		생년월일*	
	주소*		근무처 (직업)	
	전화*	(주택) (사무실)	휴대전화*	
	주요경력* (기간)	· (~) · (~) · (~) · 현 (~)		
공적내용*	<p style="color: red;">○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가급적 구체적·계량적·객관적으로 작성 -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,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- 공적기간에 해당하는 경력사항 위주로 기재 -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</p> <p style="color: red;">○ 공적내용은 2000자 이상 작성 * 행안부 상훈시스템 상 2000자 미만은 후보자 등록 불가능</p>			

*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

《 추천시 유의사항 》

- ① 피추천인(포상후보자)의 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근무처, 전화번호(주택·사무실) 등 인적사항과, 주요경력,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
-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·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
- ③ 피추천인의 성명,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 공개됨
-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(사진, 관련서류, 언론보도 등)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,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
- ⑤ 필수 기재사항(*표시)
 - 추천인 : 성명(단체명), 관계(피추천인의), 주소, 전화 또는 휴대전화
 - 피추천인 : 성명(단체명), 주소, 전화 또는 휴대전화, 공적내용